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367

발의연월일: 2025. 1. 9.

발 의 자:김미애·이종배·박상웅

송석준·김기현·이달희

진종오 · 김종양 · 강승규

김민전 · 김위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미술작품의 실태를 점검하고 훼손·분실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또는 보수·철거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주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훼손·분실 등이 된 미술작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효성 있는 미술작품 관리를 위해 제도 개선이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가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 을 경우 대집행 후 그 비용을 건축주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술작품 관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4항 및 제42조신설).

법률 제 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장(제4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벌칙

- 제42조(과태료) ① 제9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①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
	<u>항제1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u>
	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u>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u>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
	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u><신 설></u>	<u>제7장 벌칙</u>
<u><신 설></u>	제42조(과태료) ① 제9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u> 징수한다.</u>